#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33

발의연월일: 2022. 8. 2.

발 의 자: 조은희·강민국·김미애

김상훈 • 김예지 • 김정재

김홍걸 • 류성걸 • 박형수

송언석 • 유경준 • 윤두현

윤창현 • 이명수 • 이양수

이태규 · 장동혁 · 정찬민

주호영 · 최승재 · 최연숙

황보승희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고독사위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31.7%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같은 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58만 9,000여명으로 조사되어 2000년 54만 3,000여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고독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국가 가 고독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 021년 4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으 나,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 예방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민간부문·학계에서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행정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독사위 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 ·건강정보 등을 요청·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라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 신(無緣故 屍身)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통합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⑦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제13조의2(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 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 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 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 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 아 수집・보유・이용・제공・ 연계할 수 있다.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료 기관과 같은 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라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용정보
-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사, 그 밖의 기관 · 법인 · 단체 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 구 축 · 운영에 필요한 자료 ·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 • 보유 ·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 시 ·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 · 단체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 이 보유하는 자료 · 정보의 활 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 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은 목적 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 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

- 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 ⑥ 통합정보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

   스템
-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시스템
- ⑦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